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2년 4월 일 (제308회)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황규철 의원 외 6명
발의연월일	2012년 4월 일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황규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6

발의연월일 : 2012년 4월 일
발 의 자 : 황규철·김봉회·정 헌·김종필·
김희수·박문희·윤성옥 의원(7명)

1. **제안 이유**

○ 2001년 제정되어 운용중인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 기본재산 구성 등 조문을 체계화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 명시(안 제3조)

나. 기본재산 구성을 위한 재원(안 제5조)

다. 사업평가 및 행정지원 사항(안 제9조, 안 제10조)

3. **조례안 :** 붙 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 임

5. **예산조치 :** 자체 세부계획수립시 재원확보

6. **관련부서 협의 :** 경제통상국 생활경제과 협의

7. **입법예고사항** : 2012.3.2 ~ 2012.3.22(특이 의견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운용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기업·소상공인·개인”(이하 ”소기업등“ 이라 한다)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업과 개인을 말한다.
2. “재단”이란 충청북도가 일정액을 출연하여 법에 따라 설립한 충북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3. “신용보증”이란 소기업등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재단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기업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소기업등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경우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구상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다. 그 밖에 소기업등의 금전채무

제3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4. 경영지도
5. 구상권의 행사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
7. 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 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업

제4조(업무구역) 재단은 충청북도를 업무구역으로 하며 정관에 따라 업무구역안에 본점과 지점을 둘 수 있다. 다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구역외의 소기업등에 대해서도 보증업무를 할 수 있다.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6. 보증료등의 기타수입

② 도지사는 재단의 신용보증 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6조(기본재산의 용도) ①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출연금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재단의 정관, 업무방법서 등에서 정한 중소기업 등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2. 그 밖에 보증업무와 관련한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이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에 출연금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출연금 등을 회수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편성)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예산의 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평가)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단에 지원한 출연금 등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를 관련기관, 단체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와 재단이사장은 출연금 등의 운영 및 집행 상황을 충청북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 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운용한 제3조~제5조, 제7조, 제8조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개인"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사람 중 금융거래에 필요한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재산 및 소득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고 생활의 안정이나 생계비 등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신용보증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9조(설립) ① 재단을 설립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발기인(發起人)이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시·도별로 둘 이상을 둘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발기인 동의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정관과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재단 설립의 적합성을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그 결정 사항은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제4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재단의 설립절차 및 인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